

부천상동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1.06.24.)

1. 건설위치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63-2번지 일원 행복주택 630호

'19.9.27.이후 입주자모집 공고 신청 시 동일유형의 임대주택 예비 입주자로 중복선정이 되지 않으며, 장기임대 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 공고문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및 6.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천상동 행복주택은 중소기업근로자에게 우선공급되는 단지이며,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6.24.)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 신청자격별 세부 자격요건은 공고문 본문(3. 신청자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대학생 계층(일반공급)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예정인 사람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② 청년 계층(중소기업근로자 우선공급)

- 청년 :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사람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 3) 예술인

③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중소기업근로자 우선공급)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또는 만6세이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 : 만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④ 고령자(거주자 우선공급) : 만 65세 이상의 사람

⑤ 주거급여수급자(거주자 우선공급) : 「주거급여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상기 신청자격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되오니 해당 신청자격별 세부기준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행복주택의 청약접수는 인터넷(<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App명칭 : LH청약센터)로 받습니다. 다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신 분에 한하여 본인 신분증 및 제출서류(6.제출서류 참고)를 준비하여 오시면 현장(LH인천지역본부 1층 고객접견실)에서 인터넷 접수를 도와드립니다. **4.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참고**

•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 입주자 선정절차 및 공급일정



2.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공급 형태	공급 대상	공급 호수		세대 당 계약면적(m ²)				임대조건				전환 가능 보증금 한도액 (천원)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최대 거주기간 (년)	구조 및 난방	입주 예정	
		우선 공급	일반 공급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그 밖의 공용면적		임대보증금 (천원)			월 임대료 (원)		임대 보증금 (천원)	월 임대료 (원)				
						기타 공용	주차 장	합계	계	계약금 (계약시)								잔금 (입주시)
16	대학생 계층	-	80	16.98	11.37	2.82	8.63	39.8	36,720	1,836	34,884	153,000	(+) 18,000	54,720	63,000	6		
	청년 계층	80							38,880	1,944	36,936	162,000	(-) 31,000	5,720	217,580			
	주거급여 수급자	7							32,400	1,620	30,780	135,000	(+) 19,000	57,880	67,000			
26A	대학생 계층	-	20	26.77	17.18	4.45	13.62	62.02	56,440	2,822	53,618	251,160	(+) 28,000	84,440	95,160	6		
	청년 계층	20							59,760	2,988	56,772	249,000	(-) 48,000	8,440	335,160			
	주거급여 수급자	18							49,800	2,490	47,310	207,500	(+) 29,000	88,760	104,000			
26B	고령자 (거주자용)	20	20						63,080	3,154	59,926	262,800	(+) 31,000	94,080	107,830	20	철근콘크리트 / 라멘 / 지역난방	'23. 02.
36A	청년 (소득무) 계층	30	30	36.96	23.47	6.15	18.8	85.38	76,160	3,808	72,352	317,330	(+) 38,000	114,160	127,330			
	청년 (소득有) 계층								80,640	4,032	76,608	336,000	(-) 65,000	11,160	452,740			
	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10	89,600	4,480	85,120	373,330	(+) 40,000	120,640	136,000		
36B	주거급여 수급자	6	6						67,200	3,360	63,840	280,000	(-) 69,000	11,640	479,750	6~10		
	고령자 (거주자용)	12	12	44.98	28.03	7.48	22.88	103.37	107,200	5,360	101,840	446,660	(+) 44,000	133,600	153,330			
													(-) 76,000	13,600	531,660			
44	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112	112	44.98	28.03	7.48	22.88	103.37	107,200	5,360	101,840	446,660	(+) 33,000	100,200	115,000			
													(-) 57,000	10,200	398,750			
													(+) 42,000	127,120	144,660			
													(-) 72,000	13,120	504,660			
													(+) 53,000	160,200	181,660			
													(-) 91,000	16,200	636,240			

- 우선공급이 미달된 경우 남은 우선공급물량은 해당 공급대상자의 일반 공급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16형 및 26A형의 "대학생계층"의 일반공급 물량과 "청년계층"의 일반공급 물량은 각 형태로 통합 추첨하여 공급합니다.

• 일반공급물량 중 동일 공급형태로 청약미달인 계층의 공급물량은 타 공급대상 계층으로 전환하여 추첨 및 공급합니다.

- 16-26A형 대학생·청년계층의 남은 주택은 주거급여수급자에게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16-26A형 주거급여수급자계층의 남은 주택은 대학생·청년계층에게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36A형 청년계층의 남은 주택은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주거급여수급자에게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36A형 신혼부부·한부모가족계층의 남은 주택은 청년 → 주거급여수급자에게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36A형 주거급여수급자의 남은 주택은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청년에게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 신청자는 동일 면적의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임대조건은 재계약전까지 유지되며 재계약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기입증명서 제출)
- 대학생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청년 계층 또는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자격을 갖추거나 청년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다만, 계층변동, 자녀수 증가 등에 관계없이 해당 행복주택 입주자의 전체 거주기간은 10년을 초과 할 수 없습니다.
- 대학생,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 36㎡ 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고령자에 배정된 주거약자용 주택(26B·36B)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현관마루귀틀 단차 30mm, 안전손잡이, 접이식 의자)이 설치된 주택입니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신청대상입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16형의 주택에는 책상 및 책장, 소형냉장고, 가스쿡탑(2구형)이 빌트인으로 설치됩니다.
- 위 임대조건인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사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2.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계약자에 한하여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가능합니다.
 -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아래의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 ① 신청자 본인
 - ② 신청자의 배우자
 - ③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④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외국인은 신청 불가능합니다.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의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 사실이 있는 자는 공급대상자격(자격변동 포함)과 동일한 자격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8. 유의사항 ■ 재계약 기준 참고)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정적사유에 대한 소명업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신청 불가
 - 동일한 유형(예,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①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은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3-1. 대학생 계층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6.24.)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대학생은 ①-㉓와 ②~④, 취업준비생은 ①-④와 ②~④)을 모두 갖춘 자

- ①-㉓ (대학생)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일 것
- ①-④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일 것
 - * 모든 학기 수료를 완료하였으나 아직 졸업을 하지 않은 경우 재학생으로 간주
-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 ③ 신청자 부모와 본인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 *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소득을 조회
- ※ 대학생계층의 월평균소득기준 적용을 위한 가구원수는 ①신청자 본인 ②신청자 직계존속으로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③신청자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단, 신청자 본인 부모의 경우는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모두 포함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금액	기준
1인	3,589,957원 이하	120%
2인	5,018,789원 이하	110%
3인	6,240,520원 이하	100%
4인	7,094,205원 이하	100%
5인	7,094,205원 이하	100%
6인	7,393,647원 이하	100%

※ 5인가구 소득기준액은 통계청이 발표하는 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7,009,271원)에도 불구하고 4인가구 소득 기준액(7,094,205원)을 적용함
*6인이상 가구 월평균소득은 통계청이 발표한 5인이상 가구 월평균소득(7,009,271원)에 1인당 평균금액(384,376원)을 합산하여 산정

④ 신청자 본인의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이 7,2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 가능함)
- ※ '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고등기술학교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을 말함.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 사내대학, 대학원, 대학원대학은 제외.
- ※ '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를 말함. 같은 법 제51조의 방송통신고등학교, 제55조의 특수학교, 제60조의3의 대안학교 및 고졸검정고시 등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와 동등 학력 인정자 포함하며 인정학력 취득시를 졸업시점으로 간주함
- ※ 대학생계층의 월평균소득기준 적용을 위한 가구원수와 관련하여, 신청자 본인 부모의 경우는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모두 포함
- ※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는 본인과 동일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부 또는 모를 의미하며, 본인 등본에 부모 모두 미등재시 세대 분리 전 같이 거주하던 부 또는 모부 또는 모가 같이 있을 경우 부 또는 모 중 1인 선택을 말함 - 본인 초본 제출하여 확인
- ※ '다음 학기'란 입주시정기간만료일 직후 도래하는 학기까지를 말함
- ※ '다음 학기'에 입학 예정인 대학생은 공고일 현재 합격증명서 등을 통해 입학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입학 후 1개월 이내에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 '다음 학기'에 복학 예정인 대학생으로 공급신청한 자가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순위

1순위	해당 주택건설지역(부천시) 또는 연접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시흥시, 광명시)이 거주지나 재학중인 대학소재지인 자
2순위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속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 각호의 지역으로서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경기도)이 거주지나 재학중인 대학소재지인 자
3순위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란 실제 본인이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예정인 캠퍼스 소재지를 말함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위
일반공급	순위 → 추첨 ※ 16형 및 26A형의 '대학생 계층'의 일반공급물량과 '청년 계층'의 일반공급물량은 각 형별 통합하여 순위에 따라 추첨함

3-2. 청년 계층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6.24.)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신청자 본인이 청년인 경우 ①-④와 ②~⑤를 충족하면 되고, 사회초년생의 경우 ①-④와 ②~⑤를 만족하면 됨)을 모두 갖춘 자

- ①-④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출생일 1981.06.25.~2002.06.24.)
 - ①-④ (사회초년생) 출생일 1981.06.24. 이전 출생자 또는 2002.6.25. 이후 출생자 중 아래 1), 2), 3)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자
 -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
 -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 3) 「예술인 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 ③ 해당 세대의(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본인 기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주택공급 신청자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금액	기준
세대주인 청년 (세대기준)	1인	3,589,957원 이하	120%
	2인	5,018,789원 이하	110%
	3인	6,240,520원 이하	100%
	4인	7,094,205원 이하	100%
	5인	7,094,205원 이하	100%
6인	7,393,647원 이하	100%	
세대원(본인만)	1인	3,589,957원 이하	120%

※ 5인가구 소득기준액은 통계청이 발표하는 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7,009,271원)에도 불구하고 4인가구 소득 기준액(7,094,205원)을 적용함

*6인이상 가구 월평균소득은 통계청이 발표한 5인이상 가구 월평균소득(7,009,271원)에 1인당 평균금액(384,376원)을 합산하여 산정

- ④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5,4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496만원 이하 일 것
 - ⑤ 본인 입주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가능함)

- ※ '소득'은 「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하며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는 여부를 판단함
- ※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의 경우 동일면적 대학생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 ①-④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및 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었던 기간을 합산함
단, 대학 또는 고등학교 재학(휴학포함) 중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연구기관, 기간산업체, 방위산업체, 농업회사법인,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체 등에 근무한 기간은 제외
- ※ ①-④3)의 '퇴직'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판단함
- ※ ①-④3)의 '예술인'이란 「예술인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자를 말한다.
- ※ '청년계층'의 해당세대는
 - 신청자가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①신청자 본인 ②신청자 직계존속으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③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니거나 단독세대주인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만 해당함
-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의 경우 입주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이 해지 처리됨(입주전 계약자에 한하여 별도 안내 예정)

• 순위

1순위	해당 주택건설지역(부천시) 또는 연접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시흥시, 광명시)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2순위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속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 각호의 지역으로서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경기도)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3순위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소득 근거지'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함

■ 우선공급대상자 : 중소기업근로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6.24.) 현재 일반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요건을 갖춘 사람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됨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부천시	거주지이거나 소득 근거지인 중소기업근로자
----------------	------------------------

- ※ '소득 근거지'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함
- ※ 중소기업근로자 및 근무기간 배점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로 경가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통해 중소기업근로자 주택 우선공급 대상으로 확인이 되어야 인정(확인신청 방법 : 5. 신청서류 - ■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 배점(단기근속자 우대)

항목	3점	1점
중소기업근무기간	근속기간 3년 미만	근속기간 3년 이상

※ 근속기간 인정 기준 : 공고일 현재 근로중인 동일중소기업 연속근로기간을 말하며, 동일기업이 사업자번호 변경, 법인전환, 타 기업과 인수합병 등으로 인해 변경된 중소기업인 경우 근속기간을 인정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필요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우선공급	배점 → 추천
일반공급	순위 → 추천 ※ 16형 및 26A형의 "대학생 계층"의 일반공급물량과 "청년 계층"의 일반공급물량은 각 형별 통합하여 순위에 따라 추천함

※ 우선공급의 경우 동일 배점 경쟁 시 추천,
일반공급의 경우 동일 순위 경쟁 시 추천으로 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를 선정함

3-3.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6.24)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신혼부부는 ①-㉔와 ②~⑤를, 예비신혼부부는 ①-㉔와 ③~⑥를, 한부모가족은 ①-㉔와 ③~⑤를 모두 갖춘 자)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하여 1인만 신청함.(2인이 각각 신청자 전부 무효처리함)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함.

①-㉔ (신혼부부) 혼인중인 자
 ①-㉔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①-㉔ (한부모가족) 만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태아포함)
 ②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일 것 또는 만6세이하 자녀를 둔 자
 ③ 해당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맞벌이 부부 120퍼센트 이하)일 것
 ※ 단,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맞벌이 2인가구의 경우 130퍼센트 이하일 것

가구원수	일반 신혼부부		맞벌이 신혼부부	
	월평균소득금액	기준	월평균소득금액	기준
2인	5,018,789원 이하	110%	5,931,296원 이하	130%
3인	6,240,520원 이하	100%	7,488,624원 이하	120%
4인	7,094,205원 이하	100%	8,513,046원 이하	120%
5인	7,094,205원 이하	100%	8,513,046원 이하	120%
6인	7,393,647원 이하	100%	8,872,377원 이하	120%

※ 5인가구 소득기준액은 통계청이 발표하는 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7,009,271원)에도 불구하고 4인가구 소득 기준액(7,094,205원)을 적용함
 *6인 이상 가구 월평균소득은 통계청이 발표한 5인 이상 가구 월평균소득(7,009,271원)에 1인당 평균금액 384,376원(맞벌이는 461,251원)을 합산하여 산정
 ④ 해당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9,2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496만원 이하 일 것
 ⑤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⑥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의 해당 세대란'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④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예비신혼부부의 해당 세대란'
 공급신청시 세대에원에 기재하고, 서류제출 시 [예비신혼부부 세대구성확인서]에 기재된 사람(향후 세대를 구성할 사람)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것)을 말함
 ※ 한부모가족은 부 또는 모와 자녀가 동일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를 말함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공급신청시 배우자 등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가구원 명단(세대주와의 관계 포함)을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 전까지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가 동일 등본에 있지 않은 경우는 각각 제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와 입주자모집 시 신청한 예비신혼부부 당사자와 추후 입주하기 위해 제출한 혼인관계증명서상의 부부 및 가구원 명단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은 해지 처리됨.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의 경우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이 해지 처리됨(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 순위

1순위	해당 주택건설지역(부천시) 또는 연접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시흥시, 광명시)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2순위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속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 각호의 지역으로서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경기도)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3순위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소득 근거지'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함

■ 우선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6.24.) 현재 일반 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의 요건을 갖춘 사람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신청자로 전환됨
 ※ 배점항목은 신청자 본인(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기준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부천시	거주지이거나 소득 근거지인 중소기업근로자
----------------	------------------------

※ '소득 근거지'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함
 ※ 중소기업근로자 및 근무기간 배점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로 경기도 방중소벤처기업청을 통해 중소기업근로자 주택 우선공급 대상자로 확인이 되어야 인정(확인신청 방법 : 5. 신청서류 - ■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 배점(장기근속자 우대)

항목	3점	1점
중소기업근무기간	근속기간 5년 이상	근속기간 5년 미만

※ 근속기간 인정 기준 : 공고일 현재 근로중인 동일종소기업 연속근로기간을 말하며, 동일기업이 사업자번호 변경, 법인전환, 타 기업과 인수합병 등으로 인해 변경된 중소기업인 경우 근속기간을 인정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필요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우선공급	배점 → 추첨
일반공급	순위 → 추첨

※ 우선공급의 경우 동일 배점 인한 경쟁 시 추첨으로, 일반공급의 경우 동일 순위 경쟁 시 추첨으로 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를 선정함

3-4. 고령자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6.24.)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만 65세 이상인 자 (1956년6월24일 이전 출생자)

①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금액	기준
1인	3,589,957원 이하	120%
2인	5,018,789원 이하	110%
3인	6,240,520원 이하	100%
4인	7,094,205원 이하	100%
5인	7,094,205원 이하	100%
6인	7,393,647원 이하	100%

※ 5인가구 소득기준액은 통계청이 발표하는 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7,009,271원)에도 불구하고 4인가구 소득 기준액(7,094,205원)을 적용함
 *6인이상 가구 월평균소득은 통계청이 발표한 5인이상 가구 월평균소득(7,009,271원)에 1인당 평균금액(384,376원)을 합산하여 산정

②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9,2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496만원 이하 일 것

※ '고령자의 해당 세대란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④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

■ 우선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6.24.) 현재 일반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요건을 갖춘 사람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신청자로 전환됨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부천시에	거주하는 고령자
-----------------	----------

• 배점

항목	3점	2점	1점
① 신청자 나이	만 75세 이상	만 75세 미만 ~ 만 70세 이상	만 70세 미만 ~ 만 65세 이상
② 거주지 및 거주기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부천시에 5년 이상 거주	-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부천시에 5년 미만 거주
③ 장애인, 국가유공자 중 상이 1~7급자, 보훈보상대상자 중 상이 1~7급자, 5.18민중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14급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경도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자 : 3점			

※ 거주지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등·초본을 기준으로 하며, 주민등록표등·초본상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우선공급	배점 → 부천시 거주기간이 오래인 자 → 추첨
일반공급	추첨

※ 우선공급의 경우 동일 배점 및 부천시 거주기간으로 인한 경쟁 시 추첨으로 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를 선정함

3-5. 주거급여수급자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6.24.)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수급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

※ '주거급여수급자의 해당 세대란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④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주거급여수급자'란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를 말함

※ 서류제출 시 공고일 이후 발급분의 '주거급여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부적격

■ 우선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6.24.) 현재 일반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모두 갖추고 아래 요건을 갖춘 사람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신청자로 전환됨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부천시에	거주하는 주거급여수급자
-----------------	--------------

• 배점

항목	3점	1점
① 거주지 및 거주기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부천시에 5년 이상 거주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부천시에 5년 미만 거주
②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장애인,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인 경우 : 3점		

※ 거주지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등·초본을 기준으로 하며, 주민등록표등·초본상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우선공급	배점 → 부천시 거주기간이 오래인 자 → 추첨
일반공급	추첨

※ 우선공급의 경우 동일 배점 및 부천시 거주기간으로 인한 경쟁 시 추첨으로 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를 선정함

4.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 공급일정

구분	공급대상	신청접수	인터넷청약자		당첨자 발표 6. 당첨자발표	계약체결
			서류제출 대상자발표	서류제출 대상자서류접수		
우 선 · 일 반 공 급	대학생	-인터넷(PC), 모바일 '21.7.5.(월) 10:00 ~'21.7.14(수) 18:00 ※토,일요일 포함	'21.7.21.(수) 17:00 이후 (확인) *LH 청약센터 (apply.lh.or.kr)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함	'21.8.2.(월)~6.(금) 인터넷(모바일), 등기우편접수 (택1) 5. 신청서류 참고 ※ 현장접수불가 ※ 우편접수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 23, LH인천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 (우편번호:21655) 부천시동행복주택 담당자 앞	'21.11.4.(목) 17:00 이후 (장소) *LH 청약센터 (apply.lh.or.kr) * ARS(1661-7700)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함	-전자계약 '21.11.22(월) 10:00 ~ '21.11.25.(목) 18:00 -현장계약 '21.11.24.(수) ~'21.11.25.(목) (10:00~16:00) *12~13시 점심시간 ※현장계약 장소 LH인천지역본부 1층 고객접견실 (장소변경시 당첨자 개별안내)
	청년	※인터넷(PC, 모바일) 청약신청은 24시간 가능 (단 시작일과 마감일 제외)				
	신혼부부	-현장접수 '21.7.13.(화)~14.(수) (10:00~16:00) *12~13시 점심시간 ※현장접수 장소 LH인천지역본부 1층 고객접견실				
	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 * 청약접수는 PC 인터넷(<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App 명칭 : LH 청약센터)로 받습니다.
- *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청약접수는 인터넷(PC 또는 모바일)으로 접수하시는 것이 원칙이며, 만 65세이상 고령자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운 분에 '한하여'만 현장접수 가능하며, 구비서류를 지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그 외 청약자들은 인터넷·모바일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신청 이후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서류제출시 인터넷·모바일 등기우편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현장접수 불가)
-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및 서류접수는 인터넷(PC 또는 모바일) 청약자에 한하며, 현장접수자(만65세이상 고령자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운 분에 한함)는 신청접수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함
- * 서류제출대상자는 공급세대수의 일정배수 이상을 선정하며, 향후 배점합산 결과 또는 전산추첨 결과에 의해 낙첨할 수 있습니다.

■ 입주자격 검증

-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가 무주택·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 등 해당 세대는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무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금융정보제공 동의서]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행복주택 입주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금융기관에서 명의자에게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조의2(명의인에게에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부담하여야하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서명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 통보를 생략하여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구분	안 내 사 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에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서명자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터 6개월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인터넷(PC) 및 현장 청약 방법

○ 인터넷(PC) 신청자(공동인증서 필요)

- * 청약방법 : 한국토지주택공사(LH)인터넷 홈페이지(www.LH.or.kr)→청약센터→인터넷청약→청약신청(임대주택)
- *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이용하실 경우, 반드시 전자공동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동인증서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셔야 합니다.
- * 공동인증서 :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의 공동인증서 중 하나를 소지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가능)
- 현장 신청자(65세 이상 고령자로서 인터넷이 어려운 경우) : 접수장소에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인터넷(모바일) 청약 방법(공동인증서 필요)

○ 인터넷(모바일) 신청자

- * 청약방법 : 모바일 앱(LH 청약센터)→임대주택→청약신청(임대주택)
 - 앱 ("LH 청약센터" 검색) 설치 : 아이폰 → 앱스토어, 안드로이드폰 →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앱다운
- * 모바일 청약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 전자공동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동인증서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신 후, PC에서 스마트폰으로 공동인증서를 복사하여야 합니다.
- * 공동인증서 :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의 공동인증서 중 하나를 소지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가능)
- * 모바일앱 사용시 wifi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데이터 요금이 부과됩니다.
- * 모바일청약은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저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불가할 수 있으나,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 LH 청약센터 앱(App)의 '인터넷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PC.모바일) 청약 절차 및 유의사항

○ 인터넷(PC.모바일) 청약 절차



- 인터넷(PC.모바일) 청약 시 유의사항
 -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자격, 소득 등 입력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사전에 본인이 직접 해당서류 등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모바일청약은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청약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한 신청(입력)을 위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 기타사항

- 인터넷(PC) 청약 접수기간은 '21.7.5(월)10:00~21.7.14(수) 18:00까지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며,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마감에 임박하기 전에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접수기간 중에는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함에 유의
- 인터넷(모바일) 청약 접수기간은 '21.7.5(월)10:00~21.7.14(수) 18:00까지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며, 시스템 장애 발생 가능성을 감안하시어 정상적으로 접수하신 내역을 PC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PC에서 수정.취소 가능)
- 인터넷 청약하기 1~2일 전에 청약신청 처리할 PC에서 "청약신청 연습하기"를 진행하여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는지 확인하시고 충분히 가상연습을 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신청서류 및 서류제출방법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1.06.24.)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 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서류는 **신청자 본인**(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신청자 및 예비배우자) 기준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 “대학생 계층” 및 “청년 계층”은 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 공동제출서류 및 본인 신청자격관련서류를 아래 내용 숙지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현장신청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본인 직접 신청할 때	①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때	①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신청자) 도장 ③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	① (인감증명방식)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일 것), 본인(신청자)의 인감도장 ② (본인서명방식)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신청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③ 공통 :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공통 제출서류 - 반드시 공고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함

• 인터넷(PC·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에 제출 • 현장 신청자 : 접수시점에 제출

제출서류	비 고	부수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대상자 :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 전원 * “대학생 계층”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과 부모에 한하여 작성 * “예비신혼부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한하여 작성 * “주거급여수급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작성 제외	1통 (공사양식)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만14세 미만의 자는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동의방법 :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정자 서명 또는 날인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1통 (공사양식)
예비입주자 중복불가사항 확인서	대상자 : 임대주택 신청자 작성방법 : 공고시에 첨부된 확인서에 신청자가 서명 또는 날인 ※ (주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1통 (공사양식)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능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 “주거급여수급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작성 제외	1통 (공사양식)
주민등록표등본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 번호, 전일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모두 각각 제출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1통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제출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중 예비신혼부부는 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 각각 제출 · 신청인 본인기준으로 발급하되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거소)사실증명서등 해당서류 추가제출	1통
주민등록표초본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실,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아래 해당자만 제출> ·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자 · 우선공급신청자 · 공급신청자 본인(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의 초본 · 대학생 중 부모의 이혼 등으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경우 ■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참고	1통
임신진단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아래 해당자만 제출> ·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1통

■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 반드시 공고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함

공급대상	제출서류	발급처
대학생 계층	대학생 · 재학증명서 · 다음 학기에 입학예정자는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 · 다음 학기에 복학예정자는 휴학증명서 및 각서(공사양식)제출하고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 · 졸업예정증명서	해당 대학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	해당 학교
	해당자만 제출 · 부모의 이혼 등으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경우 ·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이혼사실확인) · 신청자 본인 및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등·초본(동일 거주지 확인)	주민센터 주민센터
청년 계층	우선공급 신청자 · 중소기업근로자 주택 우선공급 대상자 확인서 · 해당 서류는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후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에 신청자 본인 기준으로 온라인 발급신청을 하여야하며, 그 결과를 우리 공사가 직접 통보받아 확인 할 예정임 (확인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됨)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후 https://sanhakin.mss.go.kr 사이트에서 공고(부천상동 행복주택) 확인 후 신청(공고는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이후 게시 예정)	중소벤처 기업청
	청년 (만19세이상 ~ 만39세이하) · 소득근거지로 우선공급 자격을 적용받는 중소기업근로자의 경우 아래 서류 추가제출 ·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 중인 직장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 ※ 해당서류로 직장소재지 확인 불가 시 재직증명서(재직증명서 제출불가한 직종의 경우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등) 추가제출	해당 직장
공통 제출서류 외 추가 제출서류 없음		
※ 단, ‘소득이 없는 청년계층’ 신청자 및 주민등록상 거주지로 일반공급 순위가 확인되지 않는 신청자는 아래 해당자만 제출 서류 확인 후 제출 ※ 등본 상 거주지로도 일반공급 순위가 확인 가능한 신청자는 소득근거지 관련서류 제출 불필요 ※ 소득이 없는 청년의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국민연금가입증명서 추가제출		

사회초년생 (만19세미만 또는 만39세이상)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금 가입증명서 추가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국민연금공단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로 구직급여 수급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직 후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1년 이내의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또는 수급자격 인정명세서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지방고용노동청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예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인 복지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예술 활동을 증명한 자의 경우 : 예술활동증명서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한국예술인 복지재단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해당자만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주지가 아닌 소득 근거지로 신청한 사람 -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 중인 직장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 ※ 해당서류로 직장소재지 확인 불가 시 재직증명서(재직증명서 제출 불가한 직종의 경우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등) 추가제출 •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 중이나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상 '납부예외', '임의(계속)가입', '미가입자', '지역가입자'인 경우 - (신청자 본인이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 - (그 외)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등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이 경과한 사람 중 대학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제외가 필요한 사람 - 고등학교 또는 대학 졸업 증명서(최종학력 서류로 제출)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미가입자는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사본 제출 (미제출 시 입주불가) 	해당 직장 국세청 해당직장 (세무서) 해당 학교
신혼부부 계	우선공급 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근로자 주택 우선공급 대상자 확인서 - 해당 서류는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후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신청자 본인 기준으로 온라인 발급신청을 하여야하며, 그 결과를 우리 공사가 직접 통보받아 확인할 예정임(확인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됨) 	중소벤처 기업청

중 고 려 자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후 https://sanhakin.mss.go.kr 사이트에서 공고(부천상동 행복주택) 확인 후 신청(공고는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이후 게시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근거지로 우선공급 자격을 적용받는 중소기업근로자의 경우 아래 서류 추가제출 -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 중인 직장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 ※ 해당서류로 직장소재지 확인 불가 시 재직증명서(재직증명서 제출불가한 직종의 경우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등) 추가제출 	해당 직장
	신혼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인관계증명서 (※ 반드시 상세증명서로 발급) 	주민센터
	예비 신혼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복주택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공사양식) • 예정 세대구성원 명단(공사양식) 제출 • 대표신청자가 아닌 신청자(예비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제출 ※ 입주 전까지 신청 당시 기재한 예비 배우자와의 혼인 사실 및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 확인을 위해 혼인관계증명서(※ 반드시 상세증명서로 발급),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대표신청자와 배우자가 동일 동본에 있지 않을 경우는 각각 제출) 제출 - 입주 전까지 미제출 시 입주가 불가하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 처리됨 	공사양식 공사양식 주민센터
	[거주지가 아닌 소득 근거지로 신청한 경우 및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금 가입증명서 추가 제출 •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 중인 직장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해당서류로 직장소재지 확인 불가 시 재직증명서(재직증명서 제출 불가한 직종의 경우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등) 추가제출 •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 중이나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상 '납부예외', '임의(계속)가입', '미가입자', '지역가입자'인 경우 - 신청자 본인이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 - 그 외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등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미가입자는 입주전까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사본 제출 - 입주 전까지 미제출 시 입주가 불가하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 처리됨 	국민연금공단 해당 직장 국세청 해당직장 (세무서)
고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선공급신청 시 장애인등 배점(③)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만 추가제출 -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 국가유공자 중 상이 1~7급자 : 국가유공자 확인원 - 보호보상대상자 중 상이 1~7급자 : 지원대상자 확인원('12.7.1전 등록자), 보호보상대상자 확인원('12.7.1이후 등록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신체장애등급 1~14급자 :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경도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자 :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주민센터 국가보훈처 (지청) 국가보훈처 (지청) 국가보훈처 (지청) 국가보훈처 (지청)	

	(필수제출) 주거급여수급자증명서	주민센터
	우선공급신청 시 장애인등 배정(③)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만 추가제출	
주거급여수급자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확인원	국가보훈처 (지청)
	-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 보훈보상대상자(유족)증 사본 또는 지원대상자 확인원(12.7.1전 등록자),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12.7.1이후 등록자)	국가보훈처 (지청)
	- 5.18민중화해유공자 또는 그 유족 : 5.18민주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확인원	국가보훈처 (지청)
	-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확인원	국가보훈처 (지청)
	-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국가보훈처 (지청)
	-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주민센터
	-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	주민센터
재계약자	- 병역의무이행을 위하여 행복주택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계약을 하지 않은 대학생이 병역의무이행 후 신청하는 경우	병무청 이전 임대사업자
	- 병적증명서 - 공문 등 이전 임대차계약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행복주택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입주자가 출산이나 입양으로 세대구성원수가 증가하여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으로 다시 신청하는 경우 - 자녀의 기본증명서(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주민센터

■ 서류제출 방법

① 인터넷(모바일접수)-공동인증서 필요 ② 등기우편 접수 중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제출

- 인터넷(PC,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는 17:00이후에 발표되며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소정의 기한 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시 LH청약센터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화면의 필독안내문을 반드시 읽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신청자 서류는 서류제출 기한[21.8.2.(월)~6.(금)] 내 인터넷(모바일) 또는 등기우편으로만 접수받습니다. 등기우편으로 서류제출 시, 서류제출기간 마감일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접수 처리되며, 서류미비 및 서류미도달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기한 내 미제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 * 일반우편으로는 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인터넷 서류제출방법(전자파일 업로드)

- 인터넷 서류제출은 서류제출대상자가 공사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PC,모바일)을 통해 LH청약센터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파일을 업로드하여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 PC :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 → 고객센터 → 온라인서류제출 → 청약신청
- 모바일 : "LH 청약센터" 앱(App) 설치 → 고객센터 → 온라인서류제출 → 청약신청
- * 인터넷 서류제출 이용시 전자공동인증서가 필요하므로 전자공동인증서가 기한 만료 등으로 사용 불가능한 경우 전자공동인증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서류제출 유의사항

- 인터넷 서류제출은 LH청약센터 홈페이지(웹) 또는 모바일 LH청약센터 앱(스마트폰 등)을 통해 제출 가능하며, 모바일에서 LH청약센터 앱을 통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로 접속하는 경우는 접수 불가합니다.
- * LH청약센터 앱을 통한 모바일 서류접수는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기기에서는 서류제출이 불가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접속자가 폭주할 경우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여 서류 제출이 불가할 수 있으니, 마감시간 전에 미리 여유 있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시스템 장애 등으로 인터넷 서류접수가 중단될 경우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인터넷 접수는 접수마감일(21.8.6.(금))에는 17:00까지만 제출이 가능하므로 마감시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등기우편 접수는 마감일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가능 파일은 서류를 스캐너로 스캔하거나 모바일(스마트폰 등) 사진 촬영하여 생성한 파일, '정부24' 등 인터넷 사이트에서 PDF파일로 저장하여 발급받은 파일(행정서류 권장방식)에 한합니다. (주요 행정서류별 인터넷 발급 사이트는 LH청약센터 안내 참조)
- 서류 스캔 또는 사진 촬영시 원본 서류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그 외의 경우(예시 : 서류 사본 스캔, 인쇄 미리 보기 화면 캡처, PC 모니터 화면 촬영 등)는 접수가 불가합니다.
- 서류가 접히거나, 구겨지거나, 찢어지거나, 이물질이 묻거나, 낙서가 되지 않은 상태로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야 하며, 한 번에 한 장씩 누락되는 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 하나의 서류가 여러 장인 경우, 한 장씩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여러 장의 파일을 각각 제출하거나, 한 개의 파일로 병합하여 제출 가능합니다.
- 모바일(스마트폰 등) 사진촬영시 프레임 안에 종이 면 전체가 잘리지 않고 모두 들어오도록 촬영하며, 초점을 잘 맞추어 모든 글자가 육안으로 선명하게 보이도록 촬영하여야 합니다.
- 접수된 파일은 인쇄하였을 때 서류 원본과 동일한 내용과 형태를 갖추고 식별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접수 파일형식은 6종(PDF, JPG, JPEG, GIF, TIF, TIFF)에 한하여 허용하며, 업로드 파일 1개당 용량은 3MB로 제한합니다.(모바일은 7종 허용(PDF, JPG, JPEG, GIF, TIF, TIFF, PNG))
- **상기 유의사항에 부적합한 서류가 접수된 경우 적합한 서류로 재접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인터넷(PC, 모바일앱) 서류제출 시 원본 서류는 제출받지 않습니다. 다만, 파일 식별불가 및 원본확인필요 등의 사유로 담당자가 서류 원본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② 등기우편 서류접수

- 등기우편 서류접수는 서류제출대상자가 공사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등기우편물 발송을 통해 담당부서에 직접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 ※ **서류제출기간 마감일(21.8.6.(금))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접수 처리되며,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기한 내 미제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 * 일반우편으로는 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서류제출 장소(등기우편발송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 23, LH 인천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 "부천상동 행복주택" 담당자 앞 (우편번호 21655)
- * 일반우편으로는 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현장 신청자 : 접수 신청 시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

■ 당첨자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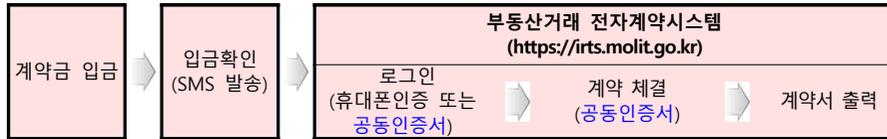
‘21.11.4.(목) 17:00 이후

- 주택의 동·호는 공급대상자 및 신청형태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추첨하며, LH 청약센터 (<http://apply.lh.or.kr>) 및 ARS(1661-7700)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함
- **착오안내 및 오류 등의 소지가 있어 담당부서에서 유선으로 당첨사실을 확인해드리지 않으니 당첨자 ARS(1661-7700)으로 본인이 직접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함 (단,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 유지되며, 해당 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소멸됩니다.**)

■ 계약안내

- 전자계약 [기간 : ‘21.11.22(월) 10:00 ~ ‘21.11.25(목) 18:00]
-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개인별 가상계좌 및 전자계약 상세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 임대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

【계약체결 절차】



-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확정일자 자동 부여 및 버팀목전세대출 이용 시 대출금리 인하 등 혜택 제공**
- ※ 「우리공사의 입금확인」은 전자계약 기간 내 평일 업무시간(10:00~17:00)에 한하여 확인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및 SMS 발송까지는 일정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 ※ 「전자계약 체결(전자서명)」은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상시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계약 하여야 함
- ※ 전자계약 체결 시 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고, 임대계약 종료 시까지 열람·출력, 저장 가능

○ 현장 계약

- **당첨자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내 [기간 : ‘21.11.24(수) ~ ‘21.11.25(목) 10:00~16:00]에 계약을 체결해야 함**

공통서류	대리 계약시 추가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금증 또는 입금사실 확인 가능한 정리된 통장 • 계약자 도장* 본인이 계약시에는 서명가능 • 계약자 신분증지참 및 사본제출(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위조방지 홀로그램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 계약자(당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동의서(공사양식),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 공통서류 외에 배우자 신분증, 계약자와의 관계증명서류 • 배우자 외의 자 (인감증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공사 조정양식), 당첨자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당첨자 인감도장 (자필서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자 본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 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7. 무주택·소득·자산 검증기준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

■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소유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포함)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등의 경우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3. (분양권등의 상속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 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⑤ 20㎡ 이하의 주택(20㎡ 이하 주택에 대한 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⑦ 무허가 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 소득·자산 산정방법

소득 및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 처리합니다.

구분	산정방법
소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해당 세대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총 자산	부동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아래 토지는 제외 - 「농지법」제2조에서 정한 농지로서 같은 법률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 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되,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금융 자산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약: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 연금저축: 잔액 또는 총납입액 •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기타 자산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준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준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부채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가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되,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제공 소득·재산 항목 설명 및 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소득	근로 소득	상시근로소득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 국민연금공단 표준보수월액 (소득신고) - 근로복지공단 산재·고용보험 월평균 보수액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 (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 근로소득) - 국제청 종합소득(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제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사업 소득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성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 소득	초·중·고등학교,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고용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 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제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국제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직불금	
	재산 소득	임대소득	영리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제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이자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제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연금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제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총 자산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국제청 종합소득 - 금융정보 조회결과 - 국민연금급여, 사회복지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 보건처 보호대상자명예수당 - 보건처 보호대상자보상급여 등
			일반 자산	토지, 건축물 및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지방세청 자료

	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기타 자산	임차보증금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약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교통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선박·항공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지방세정 자료
	입목재산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지방세정 자료
	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지방세정 자료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지방세정 자료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 지방세정 자료
	분양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금융자산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 금융정보 조회결과	
부채 (총자산 산정 시 자산금액 합계에서 차감)	금융기관 대출금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임대보증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8. 유의사항

관련항목	유의사항								
거주기간 및 재청약에 관한 기준	<p>■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table border="1"> <thead> <tr> <th>입주자격</th> <th>최대 거주기간</th> </tr> </thead> <tbody> <tr> <td>대학생, 청년 계층</td> <td>6년</td> </tr> <tr> <td>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td> <td>무자녀(6년), 자녀 1명 이상(10년)</td> </tr> <tr> <td>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td> <td>20년</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생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청년 계층 또는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자격을 갖추거나 청년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다만, 계층변동, 자녀수 증가 등에 관계없이 해당 행복주택 입주자의 전체 거주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대학생,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 36㎡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p>■ 재청약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복주택의 입주자는 동일한 입주자격으로 다시 청약하여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을 통해 재청약이 가능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산, 입양, 사망 등의 사유로 세대구성원수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 - 병역의무이행을 위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최대거주기간은 병역의무 이행 이전의 거주기간과 이후의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10년을 초과할 수 없음) - 대학생으로서 편입 등의 사유로 재학 중인 대학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 주택공급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소득근거지가 변경된 경우 - 공공주택사업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거주지가 변경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주자격	최대 거주기간	대학생, 청년 계층	6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무자녀(6년), 자녀 1명 이상(10년)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20년
	입주자격	최대 거주기간							
대학생, 청년 계층	6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무자녀(6년), 자녀 1명 이상(10년)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20년								
예비입주자	<p>■ 예비자의 계약 및 입주자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급대상자별 예비자로 선정 및 대기 중 공가가 발생함에 따라 입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예비자로 선정된 해당 공급 대상자별 자격요건을 만족하여야 계약 및 입주가 가능합니다. 								
갱신계약 등	<p>■ 갱신계약자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주택의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 시 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거주 중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바로 퇴거하지는 않으나 갱신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갱신계약자격은 공급대상자별 일반 공급대상자의 신청자격과 동일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아래 경우는 제외 대학생 계층의 경우 대학 재학, 다음 학기 입학 또는 복학예정자, 대학(또는 고등학교) 졸업(또는 중퇴)한 날부터 2년 이내 청년계층의 경우 만 19세이상 만 39세이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5년 이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경우 혼인 중일 것, 공급신청자의 혼인기간 7년 이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주기간 중 자격변동으로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확인함 								

	<p>■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주택의 갱신계약 시 적용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교통부고시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주변 지역의 시세를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거주 중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점 기준으로 산정된 공급대상자별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 제2호가목에 따른 철거민 등 기준거주자 중 해당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시점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를 초과하는 비율에 따라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2">소득기준 초과 비율</th> <th colspan="2">할증비율</th> </tr> <tr> <th>최초 갱신계약 시</th> <th>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th> </tr> </thead> <tbody> <tr> <td>10%이하</td> <td>110%</td> <td>120%</td> </tr> <tr> <td>10%초과 30%이하</td> <td>120%</td> <td>130%</td> </tr> <tr> <td>30%초과</td> <td>130%</td> <td>140%</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소득세법 제19조제1항 사업소득 및 제20조제1항 근로소득)활동 변경에 따른 '청년 계층' 입주자의 갱신계약시 임대조건은 별도 갱신계약 안내에 따름 	소득기준 초과 비율	할증비율		최초 갱신계약 시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	10%이하	110%	120%	10%초과 30%이하	120%	130%	30%초과	130%	140%
소득기준 초과 비율	할증비율														
	최초 갱신계약 시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													
10%이하	110%	120%													
10%초과 30%이하	120%	130%													
30%초과	130%	140%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주택의 입주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대학생 계층 및 청년 계층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르며, 입주신청 시 서약서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주택의 신청자격인 공급대상자격, 무주택자,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중복입주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 전환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신청, 공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세대구성원이 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계약 또는 입주 전 세대 분리를 하는 경우 중복입주로 보지 않아 본 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합니다. * 배우자 세대분리는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자동차 등록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대주택 단지 내에서는 임차인 등의 소유차량(임차인 전용 리스차량 및 근로회사 차량 포함) 이외 타인소유의 차량은 주차할 수 없습니다. * 임차인 등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및 그 임차인과 동일한 세대를 구성(주민등록 법상의 세대구성을 말함)하여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을 말함 국토교통부 고시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일정 가액(2021년의 경우 3,496만원, 자동차가액은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조회가능하며 개인별 차량가액은 조회금액과 다를 수 있음. 차량의 개별 소유지분과는 무관함)을 초과하는 차량의 단지 내 차량등록은 허용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대학생은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의 단지 내 차량등록 불허) 														
신청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후 발행된 것이어야 하며, 다른 기관에서 발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을 사용하여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에 동일한 통장을 재사용하여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첨자발표 및 계약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첨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예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 납부한 계약금은 소정의 위약금을 공제하고 환불함.
지구 및 단지특성	<p>※ 계약 전 지구 및 단지여건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확인 또는 문의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p> <p>■ 지구여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해지구는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동 지구 토지이용계획 등의 확인을 통하여 단지 주변 시설(철도 등) 및 구조물(보도, 버스환승차로, 변압기, 버스정류장 등)계획을 확인 후 계약에 응해야 하며, 주변시설물 및 구조물로 인한 소음, 미관 등을 이유로 계약조건 변경 또는 계약해지 요구 등 우리 공사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당해지구의 도시관리계획은 해당관청의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지구는 행복주택 630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입주 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별도 안내합니다. 본 지구는 도심지역에 위치함으로써, 당해 지구 인근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해당관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p>■ 단지 외부여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지구 서측은 10~11층 인접건물, 북측은 왕복25M도로, 남측은13M도로 및 육교, 철도가 위치하며, 동측은 13M도로 및 술안공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본 단지는 남측은 경인선 인접 및 북, 동측에 도로, 서측에 인접건물이 면하고 있어 철도 및 차량 통행으로 인한 소음, 먼지, 진동, 일조, 조망 및 사생활 침해 등의 환경권이 침해 될수 있으며, 이에 따른 생활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지 인근에 송내 초, 부인 초, 중, 유치원, 부천여고 및 술안공원이 위치합니다. <p>■ 단지 내부여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파트의 배치구조와 동별·호수별 위치에 따라 소음·일조·조망 등 환경권의 차이가 있을 수 있거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최고 층수는 해당 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지상 6~34층 규모입니다. 본 단지는 지하4층(기계실,전기실), 지하3층~지상5층(주차장(입주자용/공영), 부대시설, 판매시설, 지역편의시설), 지상6층~지상34층(행복주택, 2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붕은 전체동 평지붕 설치되고,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라멘 구조로 시공하였습니다. 주거약자 세대는 102동의 6~25층(26B형), 6층~17층(36B형)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관마루귀를 단차는 30mm, 양변기 안전손잡이, 샤워기에는 접이식 의자와 안전손잡이로 주거약자를 위한 세대가 구성됩니다 지상1~4층에 공영주차장, 어린이집 및 근린생활시설(상가, 지역편의시설), 지상5층 주민공동시설이 계획되어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등 생활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 보육시설 및 경로당 등의 외부 또는 5층에 에어컨 및 냉·난방기 실외기가 설치되어 가동 시 소음·먼지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층 아이시시어(어린이놀이터, 운동시설 등)과 인접한 일부세대는 소음 등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 동 아파트 복도 외부 면으로 창호가 설치되며, 복도 및 계단창호에는 방충망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저층세대에는 방범창살이 설치되지 않으며, 각 세대 발코니에는 입면분할 창으로 스테인레스 방충망과 소방대 진입창에는 롤방충망으로 설치됩니다. 복도에 면한 침실(이중창)에는 방범용 방충망이 설치됩니다. 「방충통신 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에 의거하여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안테나 및 중계장치)는 아파트의 101동, 102동 옥상 및 지하주차장 제연헬룸에 설치될 예정 이며 차후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니 청약 이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설치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지붕층에 위생안테나(101동), 피뢰침 및 헬리포트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상층 세대의 경우 옥상에 무동력 흡출기가 근접해 있어 소음·냄새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수집수조가 101동 지하4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101동 옥상에 오수집수조 배기구가 설치되어 냄새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에 인접한 세대는 추후 입점되는 영업업종에 따라 음식냄새 및 소음으로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대시설 및 상가의 에어컨 설치(실외기 등)로 인해 인접세대에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2층, 3층에 위치한 상가 실외기실 및 101동 5층 외부 실외기에서 소음, 볼래깅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지면의 단차 및 경사로에 의해 저층세대의 레벨 및 동출입 형태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 팸플릿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부 저층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따라 시차적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동에 설치된 엘리베이터와 엘리베이터 기계실로 인해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배치 및 조합에 따라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세대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은 직접 채광 및 환기가 제한되며, 채광·환기창의 설치위치는 동·호수 및 배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복도 및 세대 천장 일부가 기계설비 및 전기설비 시설물 등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 내 지상도로가 없으며, 사다리차 이용이 불가하므로 아스팔트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합니다.
- 아파트 상가 차량 출입구에 차량번호인식 카메라방식 시스템이 적용됩니다.
- 주차장은 584대(지하3층~지상1층에 행복주택 301대와 임대상가 42대, 지상2층~지상4층에 공영주차장 241대)로 되어 있으며 공영주차장 241대는 부천시에서 별도 운영합니다
- 단지내 자동차 출입구는 2개소(행복주택 및 판매시설용 1개소, 공영주차장용 1개소)이며, 행복주택 및 판매시설용에만 경비실이 설치되고, 공영주차장 출입구에는 공영주차장 관할하여 관리실이 설치됩니다.
- 전기차 충전기는 주거용 지하주차장에 완속충전기가 2개소(지하2층,지하1층) 설치되며, 이동식 충전기(3KW) 사용용도로 충전기가 설치되는 해당층에 콘센트가 3개소씩 추가로 설치됩니다.
- 주차구획(지상 및 지하주차장) 및 대수는 계획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상가)용 주차장은 지상1층 및 지하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에 따른 주차장 중 지하주차장의 차로 및 출입구 높이는 2.3m이며 내부 주차공간 높이는 2.1m입니다.
- **이사차량은 지하1층으로만 통행 가능하며, 지하1층으로 진입 후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이사하여야 합니다. 지하1층의 차로 높이는 이사 등의 목적으로 2.7m입니다.**
- 지하주차장 배수 트렌치의 시공허용오차로 인해 일부 구간에 물이 고일 수 있습니다.
- 주차장 진·출입 경사로는 동절기에 차량의 미끄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해 지하주차장에 환풍이 설치되며 환풍 상부(옥외공간)에 환기탑이 설치되어 환기팬 가동 시 소음·먼지·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차장은 단지 배치 상 동별 주차대수, 동 출입구 개수, 출입동선 길이 등이 균등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일부 세대는 주차구획이 주동 출입구에서 거리가 먼 곳에 계획되어 이동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자전거 보관대는 단지 전체 범정 수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단지 분산 설치되나, 동별로 동일한 수량이 동일한 위치에 설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 단지 및 아파트 내 공용시설(엘리베이터, 주차장, 편의시설 등)의 경우에는 동별 위치에 따라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우편물 수취함은 1층에 위치하며, 무인택배보관함은 5층에 설치됩니다.
- 단지 내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공동현관 등에 CCTV가 설치됩니다.
- 아파트 101동 지하1층에 분리수거 및 일반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창고가 설치되어 냄새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재활용보관소는 101동 지하1층에 위치할 예정이며, 일부 거리가 먼 동의 경우 이용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부천시 관련기관의 운영계획에 따라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의 특성상 단지 내외의 보안등·가로등·공원등과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의 소음 및 전조등으로 인해 저층세대에서는 사생활 침해 등 생활의 불편을 느낄 수 있습니다.
- 아파트 PIT층은 소방법규에 따라 출입구가 점검구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에는 전기실/발전기실, 기계실(열교환실), 지하저수조에 집수정 배수펌프가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 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식재, 시설물, 포장 등 조경계획 및 색채디자인은 추후 관계기관 심의결과 및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사항이 될 수 없습니다.
- 시설물의 위치·구조·규모·색채와 지반고 등은 추후 측량결과, 지반현황 및 각종평가·심의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 및 지반레벨(계획고)은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하부 커뮤니티 시설,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태양광 발전설비 및 태양광 전지판등의 시설물이 지상5층(101동 근처) 옥외 및 최상층 옥상에 설치되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저층 6층~10층 복도에는 완강기 3개소가 설치 됩니다.
- 특고압이 지하3층 주차장 천장을 횡단하여 지하4층 전기실로 인입 설치 됩니다.
- 지상 4층에는 부천시 관련기관에서 운영하는 지역편의시설이 입주예정입니다.

■ 마감재 및 발코니 등

- 본 단지의 단위세대 평면설계는 발코니 비확장형을 기본으로 설계되었습니다.
- 발코니 면적은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 공간입니다.
- 각 세대 타입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에 차이가 있습니다.
- 현관, 발코니 등에서 바닥 단차는 시공 과정상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홍통, 배수용 입상관이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저층부 세대 발코니에는 원활한 배수를 위하여 별도배관을 설치하므로 고층부와 배관이 상이합니다.
- 발코니에 빨래건조대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전 세대 발코니의 조명기구는 벽부형으로 설치됩니다.
- 세대 내 발코니에는 화재 시 옆 세대로 이동할 수 있도록 비상대피도로(비상탈출용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고, 비상대피도로에는 자재를 적재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동 16㎡형 1호세대 6층~34층의 층간 발코니 바닥, 44㎡형 6호세대 30층~34층의 층간 발코니 바닥에는 비상대피용 하향식피난구가 설치됩니다.**
- **각동 44㎡형 7호세대 6층~30층 발코니 외부 창호에는 소방대 진입창이 설치됩니다.**
- 세대 천장 및 발코니(벽)에는 스프링클러 헤드가 설치되며, 입주 시 파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내, 외부 창호 및 침실 복도 측 창호에는 창호형 환기구가 설치됩니다.
- 비확장 발코니는 비난방 공간으로 결코 저감재가 시공되나, 과도하게 습한 실내 생활환경 및 환기가 부족한 경우 및 당해 지역의 특성상 결로 및 곰팡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 입주자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 비확장 발코니에 결로저감재를 시공함에 따라 부착폭 만큼 발코니의 일부 면적이 시공허용오차로 인해 감소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외부 난간이 없으며, 입면분할창의 하부 접합유리창이 발코니 난간으로서의 기능을 합니다.
- 입주자의 생활환경(관상용 식물, 사워, 빨래건조, 가슴기 가동 등), 단열성능 및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내부에 자연 환기량 감소 및 습도증가 시 결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 예방조치가 필요합니다.
- **세대 간 칸막이는 경량벽으로 방화 및 소음 차단을 위하여 콘센트 등 전기, 설비 배관 및 관련 마감재는 노출 배관되어 있습니다.**
- 거실과 발코니 벽면 사이에 에어컨 배관용 배관구가 상, 하부 2개소 설치됩니다.
- 실외기실에는 에어컨실외기 배수용 드레인관과 우수배관이 설치됩니다.
- 주방가구 하부에는 바닥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으며 가구설치부위의 비노출면은 별도마감이 없습니다.
- 각 세대마다 주방배기용, 화장실배기용 방화담퍼가 설치됩니다.
- 벽걸이 TV 고정 시 충격에 의한 마감재 탈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하며, 경량벽체로 되어 있는 곳은 보강판이 설치된 위치에 벽걸이 TV 설치하여야 합니다.
- 대용량 가전제품(냉장고, 세탁기 등)의 경우 전기용량 및 규격에 따라 설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16타입 세대에 빌트인 가스쿡탑(2구형)과 빌트인 냉장고(130~160L)가 설치되며, 이외 타입의 세대에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신발장하부에 원격검침용 급수, 급탕 미터기함이 설치되며, 난방용 열량계는 복도 PD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 주방 상부 천정에 렌지후드 댐퍼 점검용 점검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팸플릿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자재는 성능향상을 위하여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출입문 및 세대 침실문은 ABS 재질입니다.
- 세대내 목문을 및 시트마감 부위는 시공상 불가피하게 타카핀 자국이 보일 수 있습니다.
- 전 세대 시스템 욕실(UBR)로 시공되며 그에 따라 바닥 난방코일이 없습니다.
- 각 단위세대 형별로 평면계획에 의거 주방가구 길이 및 형태가 상이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위세대 내 주방의 식탁용 조명기구(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을 예상하여 위치를 정하였으며, 위치변경은 불가합니다.) • 싱크대(개수대)하부는 난방설비인 온수분배기 및 급수, 급탕분배기 등이 설치되어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는 부적합합니다. • 세대 내 통합관리반(분전반 및 통신세대단자함)이 세대 현관(신발장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 창호, 가구, 타일, 석재, 바닥재, 벽지 등의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팜플릿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마감자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팜플릿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컷 또는 그래픽으로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 시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팜플릿 등에 적용된 자재 중 관계법령 등에 저촉될 경우나 자재의 품질, 품귀, 제조회사 등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팜플릿에 적용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 변경요구는 불가하오니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한 후 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창호류, 주방가구, 신발장, 조명기구, 소화용기구, PVC배관 등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12조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이 사용될 예정이며 팜플릿 등에는 유사 이미지를 구현한 것으로 실제 설치 시 선정된 업체에 따라 디자인 및 색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 홀 바닥의 경우 지하3층에서 지상5층까지는 미끄럼 저항성능 확보를 위해 석재(혼드) 마감으로 시공되며, 지상6층 이상은 테라조타일로 시공됩니다. <p>■ 일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정부의 정책이나 관련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 보상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입주 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통보 합니다. • 단지 내에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주민카페, 게스트하우스, 공용세탁실 등 주민편의시설 설치되며, 내부시설(가구, 비품 및 인테리어 등)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관리·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없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사용 및 운영방안은 실입주 후 입주민자치협의기구(가칭)에서 결정하여 운영되며, 입주민 전체의 공동시설물로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단지명칭·동표시·아파트·동양·C1로·벽체출눈 및 외관디자인(색채,패턴 등)은 추후 관계기관 심의 결과 및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불법 구조변경 시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당해 단지 전체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므로 계약상 임대면적과 실제계약면적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변경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당 대지 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준공 시 확정측량)로 인해 대지면적의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일부세대는 공사 중에 품질확보 및 시공성 검토를 위하여 현장견본세대로 사용될 수 있으며 계약자에게 별도로 통보치 않습니다. • 도배, 도장, 가구, 타일, 위생기구공사 등의 상태확인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입주자모집 공고)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이나 타사 또는 당사 아파트를 비교하여 추가적인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임대아파트와 충분히 비교검토 후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과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 표현의 오류 및 오기 등의 수정과 성능의 개선 및 품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인, 허가 또는 설계변경 등은 사업주체가 결정합니다. • 현장여건의 반영 및 구조·성능·품질개선 등을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고, 관련 법령에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등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복도·엘리베이터 홀과 같은 공간은 공용부위이므로 관련법령에 의거 임의로 구조변경이 금지되며 전용공간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보도·조경공간·주차장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 점유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 팜플릿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평면도, 배치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참고자료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제작과정에서 오류·오가오탈자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팜플릿 등에 표현된 각 단위세대 평면의 치수는 팜플릿 제작 과정상 이해를 돕기 위하여 벽체 중심선을
--	---

	<p>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팜플릿 등 각종 홍보물에서 확인이 곤란한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용량·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에 의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적용된 내용은 향후 인, 허가 과정이나 관계기관의 사정,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기타 자세한 단지여건, 혐오시설의 유무 및 사업부지 개발계획 등은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한 주변개발, 일조권,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등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정일(입주자사전방문 등의 지정일) 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아파트 및 단지 공사 현장 내에는 출입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는 LH가 입주민을 위한 주거생활서비스가 시행중이거나 추후 제공할 예정이며, 본 단지의 입주자로 선정된 청약신청인은 입주 후 해당 주거생활서비스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 본 단지의 입주자로 선정된 청약신청인은 입주 후 주민공동시설이나 부대복리시설 등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 공동주택의 특성 및 거주자의 생활환경 차이 등으로 인해 층간, 세대 간 생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p>기타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소유,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신청자가 예비입주자로서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주택 해약발생시 일반 세대에 우선하여 공급 안내할 예정이니, 해당세대의 경우 장애인 세대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아님) *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뇌병변장애),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인 경우.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피임양자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임양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입주일은 해당 주택의 열쇠교부일이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입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을 입주일로 봅니다. • 입주 시 잔금 납부, 이사집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 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 부하여야 합니다. • 임차인은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금융 취급은행(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 Bank, 신한은행, IBK기업은행)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계약금 대출, 만 19세 이상 대학생의 경우 전세 보증금 대출 가능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입주개시일 이전에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 합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 임대료 납부는 자동이체 및 이빌링을 원칙으로 하며,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에서 자동이체 및 이빌링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

9. 주택성능등급 및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따라 주택성능등급 및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기합니다.
아래 공공주택성능등급은 예비인증 내용으로, 본 인증 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소음관련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경량충격을 차단성능	★★
중량충격을 차단성능	★★
화장실 급배수소음	★★★
세대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
외부소음(교통소음(도로,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	-

2) 구조관련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가변성	★★★★
수리용이성 전용부분	★
수리용이성 공용부분	★★
내구성	-

3) 환경관련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조경	생태면적율	★
	자연지반 녹지율	★
	연계된 녹지축 조성	-
	비오톱 조성	-
생태학적가치	기존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
인접대지 영향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	-
세대내 일조확보율		★
실내공기질	실내공기오염물질 저방출 제품	★★★★
	단위세대의 환기성능 확보 여부	★★★
	자연통풍 확보 여부	-
폐기물 최소화	생활용가구재 사용억제 대책의 타당성	-
생활폐기물분리수거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
	음식을 쓰레기 저감	★★
친환경 인증제품 사용	유효자원재활용을 위한 친환경 인증제품 사용여부	★★
	재료의 탄소배출량 정보표시	★★★
	우수부하 절감	우수부하 절감대책의 타당성

3) 환경관련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수자원 절약	생활용 상수 절감대책의 타당성	★★★★
	우수이용	-
	중수도 설치	-
에너지절약	에너지성능	★★★★
지속가능한 에너지원 사용	신·재생에너지 이용	-
지구온난화방지	이산화탄소 배출저감	★★
	오존층 보호를 위하여 특정물질의 사용금지	★★★

2) 생활환경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커뮤니티선테 및 시설 공간의 조성수준	★★	
보행자도로	단지내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 여부	-
	외부보행자 전용도로 네트워크 연계여부	-
교통부하저감	대중교통에의 근접성	★★★★
	자전거 보관소 및 자전거도로 설치여부	★
	도시중심 및 지역중심과 단지 중심간의 거리	★★★★
사회적 약자의 배려	전용부분	-
	공용부분	-
홈네트워크	홈네트워크 종합시스템	-
온열환경	각 실별 자동온도 조절장치 채택	★★★★
방법안전	방법안전 콘텐츠	-
체계적인 현장관리	환경을 고려한 현장관리 계획의 합리성	★★★
	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지침제공의 타당성	★★★★
효율적인 건물관리	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지침제공의 타당성	★★★★
	사용자 매뉴얼 제공	★★★★

5) 화재소방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화재소방	감지 및 경보설비	-
	제연설비	-
	내화 성능	-
피난안전	수평피난거리	-
	복도 및 계단 유효폭	-
	피난설비	-

10. 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블록	사업주체	시공업체	연대보증인	감리회사
부천상동 행복주택	한국토지주택공사	에이스건설(주) (109-8143173) 외 5개사	-	-

11.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안내

■ 주거약자용 주택(26B, 36B) 편의시설 설치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주거약자나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세대의 세대주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 대상자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드립니다.

- * 대상자 : 지체·뇌병변장애인, 휠체어사용자,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은 주거약자법 시행령 별표 1, 2를 참고하시어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만 신청가능합니다.
- *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는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주거약자용 주택 외)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별표 8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 * 대상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뇌병변장애인, 상이 3급이상 장애인,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애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말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 및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유의사항

- ▶ 유의사항 : 주택 공정에 따라 일부 편의시설은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계약부천사업본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해당 부서는 건축부서로 편의증진시설 설치에 관한 문의만 응대가 가능하며, 그 외 임대 관련 문의는 대표콜센터 (1600-10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신청 시 필요서류 :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카드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5.18민주공자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등
- ▶ 신청기간 : 계약 체결기간 내(공정진행상황에 따라 설치불가능한 품목 있을 수 있음)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 지원으로 건설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

팸플렛 배부처	LH인천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
임대문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콜센터 : 전국 대표전화 1600-1004 · 인터넷 - 마이홈포털 (http://www.myhome.go.kr) <li style="padding-left: 20px;">- 행복주택 공식 블로그 (http://blog.naver.com/happyhouse2u) <li style="padding-left: 20px;">- LH 홈페이지 (http://www.lh.or.kr)
당첨자 ARS	1661-7700
인터넷 청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 :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임대주택) · 모바일 : "LH 청약센터" 앱(App) 설치 → 임대주택 → 청약신청(임대주택)
접수처 약도	<p> ■오시는길 - 지하철 : 수인선 호구포역 2번 출구 (도보 5분) - 버스 : 32번, 20번, 38번, 3-2번, 103-1번, 524번 (논현3단지하늘마을 또는 인천남동우체국 하차) </p>
도로명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 23, LH인천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

△ LH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 피해를 겪으셨다면 저희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고객센터 내 「부조리 및 갑질신고」에 제보 및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06.24.

인
천
지
역
본
부